

議長으로부터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審査 하도록 回附된 案件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.

94年 11月 10日 1995年度 豫算案 및 1994年度 追加更正豫算案이 回附되었고, 1994年 11月 2日 서울特別市都·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 條例中改正條例案이 回附되었고, 94年 11月 9日 서울特別市青少年職業訓練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및 서울特別市社會福祉施設等設置 및 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 回附되었으며, 94年 9月 22日 서울特別市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이 回附되었고, 94年 11月 22日 서울特別市 西北圈 農水產物都賣市場 建設에 關한 對政府建議案 및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回附되었고, 94年 11月 30日 首都圈埋地運營管理組合規約中變更規約同意案이 回附되었으며, 94年 11月 15日 道峰쓰레기燒却場 建設事業施行에 대한 住民參與要求 請願이 回附되었습니다.

이상으로 委員會 報告事項을 마치겠습니다.
○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.

1. 1994年度第1回産業經濟局所管追加更正豫算案

(10時 23分)

○委員長 李敏國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 第1回 産業經濟局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産業經濟局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産業經濟局長 李政奎 産業經濟局長입니다.

尊敬하는 李敏國 委員長님, 그리고 委員 여러분, 오늘 1994年度 第1回 우리 市の 歲入·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면서 지난 1年間을 돌이켜 볼 때 局長 以下 産業經濟局 關係公務員 모두가 熱과 誠을 다하여 職務遂行에 最善을 다하였습니다만, 미진한 分野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욱 反省하면서 새해에는 크게 精進하고자 다짐하는 바입니다.

지난 해 議決하여 주신 1994年度 産業經濟費 豫算事業을 마무리하면서 西南圈 農水產

物都賣市場 建設事業費 139億원을 부득이 明示移越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.

서울市에서는 西南圈 農水產物都賣市場의 早期建設을 위해서 1994年度 事業으로서 조속한 立地選定과 選定된 立地에 대하여 都市計劃施設 立案 및 決定告示를 完了하고 敷地買入에 착수하고자 年차별 計劃을 수립, 推進하여 왔습니다만 麻谷地區 開發事業 等 5大戰略據點 開發을 위한 서울市 全體 都市計劃 구상과 연계, 立地選定이 지연됨으로서 建設 입지에 대한 都市計劃施設 立案 및 決定告示 등 事前節次 所要期間 및 設計期間의 絶대부족으로 94年度 本 事業費 豫算 141億원 중 敷地買入費 123億원, 그리고 實施設計費 15億원, 基本調査設計費 중 交通影響評價費 1億원 등 總 139億원을 부득이 明示移越하여 1995年度 執行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.

이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豫算의 적정한 執行을 위해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○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.

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.

(報告)

1994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産業경제국소관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1.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

○서울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개정('94.1.1.)으로 담배소비세의 수입이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이 30%에서 45%로 조정됨에 따른 추가부담 요인과,

○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('94.3.16.)으로 시의회 회기일수 연장 및 일비 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에

<p>산 확보가 불가피하였고, ○기타 국제교류단 설립 출연금, 정부지침에 따른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요경비 확보에 따라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이 되겠습니다.</p> <p>2.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○서울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</p>	<p>당초예산 3조 4,253억원에서 2차에 걸친 간주처리액 1억 8,200만원을 추가하여 '94년도 기정예산은 3조 4,254억 8,200만원이 되겠습니다.</p> <p>○따라서 '94년도 세출예산 총액에는 변동없이 예비비 등에서 가용재원 890억 2,0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경정하였습니다.</p>															
<p>추경예산안 규모</p> <p>(단위 : 백만원)</p>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기 정 예 산</th> <th rowspan="2">추경예산안</th> <th rowspan="2">기정예산대비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당초예산</th> <th>간주처리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회계</td> <td>3,425,482</td> <td>3,425,300</td> <td>182</td> <td>3,425,482</td> <td>+89,020 △89,02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기 정 예 산			추경예산안	기정예산대비	계	당초예산	간주처리액	일반회계	3,425,482	3,425,300	182	3,425,482	+89,020 △89,020
구 분	기 정 예 산			추경예산안	기정예산대비											
	계	당초예산	간주처리액													
일반회계	3,425,482	3,425,300	182	3,425,482	+89,020 △89,020											
<p>3. 산업경제국소관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 ○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에는 사업별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없이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. ○다만,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예산 141억원 중 2억원은 기본조사설계비로 '94년도에 집행예정이고 나머지 139억원(국고보조금 109억원, 시비 30억원)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명시이월 사업비로 하여 예산을 다음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.</p> <p>4. 검토의견 ○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'94년도 예산 141억원 중 국고보조금이 111억원, 시비예산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, 회계년도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원만 겨우 집행예정이고, 동 사업의 추진여건으로 보아 잔여예산 139억원은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○그러나 동 건설사업비의 이월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총칙을 변경하여 명시</p>	<p>이월 사업비로 처리한 것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인 것 같으나, 명시이월 제도도 사고이월과 같이 예산을 다음년도까지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동일하므로, ○동 건설사업의 공사기간('94~'97)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예산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반환없이 년도별로 적정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.</p> <p>.....</p> <p>감사합니다. ○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.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. 權赫柱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. ○權赫柱委員 權赫柱委員입니다. 이번 94年度 産業經濟局所管 追加更正豫算</p>															